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3)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제4차~8차)

[제4차 개정<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 개정]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한 평가·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함.

- ②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함.
- ③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칭·취급상 주의사항 및 환경상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 ④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 인한 위험 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



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 설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함.

- 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의뢰에 따라 각각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유해·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와 작업환경의 평가·개선 지도 등을 행하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함.

제5차 개정<법률 제5247호, 1996. 12. 31.>

노사협의회법(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
[1996. 12. 31, 법률제524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 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6차 개정<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의 의무를 강화하고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근로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도록 함.
- ②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③ 건설업 등 도급을 받아 행하는 사업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수급인 및 근로자등과 합동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 ④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안전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이를 제조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⑥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체검사, 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을 행할 때에 근로자 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함.
- ⑦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 단

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⑧ 산업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제7차 개정<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및 처분기준(제63조의2)을 행정절차법(98. 1. 1. 시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중 개정법률
[1997. 12. 13, 법률제5453호]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② 제15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8차 개정<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용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 변경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중 개정법률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102조”를 “근로기준법 제104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다음호에 계속)